



땅 끝 해 남 소 식

2023년 1월 2일(557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 **군정방침** ◇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321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조례·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조례

- ◎ 해남군 조례 제3297호 -----2
- ◎ 해남군 조례 제3298호 -----5

고시

- ◎ 해남군 고시 제193호 -----11
- ◎ 해남군 고시 제199호 -----12
- ◎ 해남군 고시 제205호 -----14

공고

- ◎ 해남군 공고 제2863호 -----16

조례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2.)에서
의결된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월 2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7호

붙임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사회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 위험자”라 한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 12. 12.)에서
의결된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월 2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98호

붙임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남군”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해남군의”를 “군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남군 공공자금”을 “공공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해남군 공공자금”을 “공공자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군의”를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7호) 중 “밖에서”를 “밖에”로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u>해남군</u>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p> <p>2. (생략)</p> | <p>제2조(정의) ----- -----.</p> <p>1. ----- ----- <u>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u> ----- -----.</p> <p>2. (현행과 같음)</p> |
| <p>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해남군</u>의 유희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 <p>제3조(군수의 책무) ----- ----- <u>군의</u> ----- ----- -----.</p> |
| <p>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u>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u>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 ----- <u>공공자금</u> ----- -----.</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p> | <p>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

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정기예금 및 공금 예금계정의 평균 적용금리
2. 공금예금계정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군이 가입한 공공자금 수익률
4. 군의 이자수입 총액
5. 공금예금계정의 평균 잔액
6.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군 협력사업 실적
7. 그 밖에서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 공공자금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

-----.

② -----

-----.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 <삭 제>
3. 군 -----
<삭 제>
- <삭 제>
4. -- 밖에 -----

부 칙

⑤ 군수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고 시

해남군 고시 제2023 - 196호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16-4 일원에 전라남도 주차장 변경(확장)을 위한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3. 12. 21.

해 남 군 수

1.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다음
2.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해남군청 건설도시과(☎061-530-5445), 안전교통과(☎061-530-56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1.1.1. 교통시설

1.1.1.1.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4 | 주차장 | 해남읍 읍내리 16-4번지 일원 | 850 | 증)522 | 1,372 | 해남군고시 제2009-77호 2009.06.24. | |

1.1.1.1.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4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변경 - A=850㎡→1,372㎡ - 증)522㎡ | ·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차장 변경 |

해남군 고시 제2023 - 199호

해남군 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858번지 일원에 해남군 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3. 12. 21.

해 남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85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하수도)
 - 명 칭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29,558.7㎡
 - 연 면 적 : 5,200㎡(1차 : 1,316.19㎡, 2차 : 3,883.81㎡)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건설도시과(☎061-530-5252) 및 상하수도사업소(☎061-531-3683)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권리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소 | 주소 | 성명 | 권리관계 | |
| 합 계 | | | | 29,558.7 | 29,558.7 | - | - | | | | |
| 1 | 회원면 화봉리 | 858 | 잡 | 29,136.0 | 29,136.0 | 한국 관광공사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다동) | | | | |
| 2 | 회원면 화봉리 | 859 | 잡 | 422.7 | 422.7 | 한국 관광공사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다동) | | | | |

해남군 고시 제2023 - 205호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337-1번지 일원에 해남군 농업연구단지의 진·출입을 위한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3. 12. 28.

해 남 군 수

1.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 다음
2.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해남군청 건설도시과(☎061-530-5252) 및 기후변화대응지원단 (☎061-530-508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해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교통시설

1.1.1.2. 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신설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490 | 녹산길 (평활리 339) | 평활리 337-2 | 일반 도로 | - | - | 삼산 연구 |

1.1.1.3. 도로 결정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중로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490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 농업연구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신설 |

공 고

해남군 공고 제2023-2863호

해남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 공고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191번지 일원 공룡박물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해남 군관리 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 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8.

해 남 군 수

1. 해남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신설 | A | 공룡박물관 근린공원 | 근린공원 |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191번지 일원 | - | 증)18,591 | 18,591 | | 화원 068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A | 공룡박물관 근린공원 | ○ 공원 신설 - 위치: 황산면 우항리 191번지 일원 - 면적: 18,591㎡ | ○ 근린공원 조성을 통한 공룡박물관 내 방문객 유치 및 우항리 주민들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공원조성계획 내용 : 근린공원 조성

가. 주요시설 : 기반시설, 유흥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 등

3. 주민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3. 12. 28. ~ 2024. 1. 10.(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해남군청 공룡박물관 및 황산면사무소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공룡박물관(☎061-530-5946) 및 황산면사무소(☎061-531-34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서

공 램 의 견

의견내용 :

※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도면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023. 12. .

의견제출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해 남 군 수 귀 하